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03
----------	-----

2024. 10. 18.(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0월 11일

-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24.12.31.)

-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사무 :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 現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22.1.1~'24.12.31)
- 선정방법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름
- 위탁금액 : 年3,472백만원(기금^{50%}1,736, 도비^{50%}1,736) * '24년 예산기준
- 위탁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자살현황 분석, 자살 및 정신관련 종사자 교육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 정신보건사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홍보 등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²⁴⁾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제2항²⁵⁾에 따라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임.

※ 위탁운영 약정체결 현황: 최초(13.5.15~'15.12.31), 1차('16.1.1.~'18.12.31.), 2차('19.1.1~'21.12.31.), 3차('22.1.1.~'24.12.31.)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4. 12.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2항²⁶⁾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5)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

26)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②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

○ 또한, 센터의 사무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바,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며, 사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함.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 따라서,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사무의 내용이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²⁷⁾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충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구하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 센터의 민간위탁은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무 내용이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바 민간위탁 운영이 오히려 사업 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단 이후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03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24.12.31.)
-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사무 :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現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22.1.1~'24.12.31)
- 선정방법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름
- 위탁금액 : 年3,472백만원(기금^{50%}1,736, 도비^{50%}1,736) * '24년 예산기준
- 위탁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자살현황 분석, 자살 및 정신관련 종사자 교육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 정신보건사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홍보 등

○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 및 심사위원회 구성 : '24. 10. ~ 12.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4. 12.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 '24. 12.

3. 참고사항

-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추진계획(붙임1)

4. 관계법령 발췌(붙임2)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5. 기타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붙임3)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붙임4)

I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정신건강수준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 지지 체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등 정신 건강증진 도모, 중독관리·자살예방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

□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II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 소재지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개신동) 지오빌딩 2층
- 운영인력 : 6개팀 총 40명
 - 센터장1, 부센터장1, 상임팀장2, 정신건강복지1팀7, 정신건강복지2팀6, 충북청년마음건강센터6, 자살예방1팀6, 자살예방2팀5, 응급개입팀4, 회계·행정2
- 현수탁기관 : 충북대병원(병원장: 김원섭) / 센터장 : 정준형(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2.1.1.~'24.12.31.(3년)

- 위탁기간 : 3년('25.1.1. ~ '27.12.31.)

- 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제4항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사무위탁
 - 자격요건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사업비 : 3,472백만원(기금 1,736백만원^{50%}, 도비 1,736백만원^{50%}) *변동가능
- 주요업무
 -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자살 현황분석, 자살 및 정신관련 종사자 교육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 정신보건사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Ⅲ, 위탁운영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① 위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위탁 계획 -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사무 등 	'24.9월 중
② 의회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의거 의회동의 득 	'24.10. 임시회
③ 수탁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방법 : 공개모집(도 홈페이지) • 공모기간 : 20일 ~ 30일 • 자격요건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24.10.~11.
④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6~9명 • 심사항목 : 수행능력, 전문성, 사업계획등 • 수탁기관결정 : 고득점자 	'24.12.
⑤ 위·수탁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 3년 • 위·수탁계약서 공증 	'24.12.
⑥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수탁기관) 	'25.1. ~'27.12.

IV 세부 추진계획

1 도의회 동의

- 관련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제2항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의회보고 : 서면보고(9월), 정책복지위원회 안건 제출(10월)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의회 동의 : '15.10.2.(제234회)

2 수탁기관 공모

- 공모기간 : 2024. 10. ~ 11.
- 공모방법 : 공개모집(도 홈페이지, **공고문 '붙임1'**)
- 응모자격
 - 충청북도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
 -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충청북도 소재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정(고득점자)
- 위탁조건
 - 보조사업비 외 추가지원 없음, 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 적용
 - 사업공간 확보 및 사업수행 인력 고용승계
 - (계약해지) 계약내용과 달리 운영, 법인허가 취소 등

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별도 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 6 ~ 9명 이내
 - 당연직 : 기획관리실장(위원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 관련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제7조
- 개최시기 : 2024. 12.
- 심사항목 : 업무수행능력, 사업실적, 전문성, 사업계획* 등
 - * 사업계획 : 응모기관별 20분 이내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최고점기관 결정
 -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1개 기관 공모 경우: 70점 이상·과반수 찬성으로 선정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④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수탁기관 선정 후
- 내 용 : 계약체결 및 공증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계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V 향후계획

- 의회 보고 : '24. 10.
- 수탁기관 모집 및 심사위원회 구성 : '24. 10. ~ 12.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24. 12.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 '25. 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

-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점
계		100	
신청기관의 전문성 (20점)	기관 사업추진 전문성, 사업수행의지 - 시설·장비기술 보유 여부 등	20	
신청기관의 사업실적 (10점)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경험 등	10	
사업계획의 충실도 (40점)	사업목적, 비전, 추진방향, 전략	15	
	사업현실성·적정성·사업량·창의성	1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0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15점)	센터 인력 고용승계 여·부	5	
	정신건강분야 전문인력 확보	5	
	수탁기관 사무 공간 등 지원 범위	5	
예산편성의 적정성 (10점)	사업예산 배분의 적정성	5	
	센터운영비의 자부담 능력	5	
운영능력평가(5점)	전반적인 사업 발전가능성 등	5	

1 추진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2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정신보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 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 시설)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보유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신보건 관련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③ 경제적 효율성	○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력, 정보, 협업체계 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체계 구축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지휘·감독)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정신보건관련 전문인력이 풍부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보유 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